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36
----------	-------

발의연월일 : 2023. 9. 18.

발 의 자 : 김상희 · 김민철 · 윤관석
윤미향 · 전해숙 · 남인순
김홍걸 · 박상혁 · 이은주
박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의 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등이 약관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때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17조의3 신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3(계약의 해제·해지 시 고지의무) ①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약금 등 불이익한 사항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고지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해지 시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3(계약의 해제·해지 시 고지의무) ①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약금 등 불이익한 사항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고지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